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기준

목적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ersonal Care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혹은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은 시설을 재개하는 시점에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개인 관리 사업체의 운영자/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은 문신 및 피어싱 시설, 외모 개선 전문가, 마사지 테라피, 스파, 미용업, 네일 전문, UV 및 비 UV 선탠 또는 왁싱 등 헤어와 관련이 없는 개인 관리 사업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미용실 및 이발소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Hair Salons and Barbershop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서 다루는 헤어 관련 개인 관리 서비스(예: 헤어컷, 컬러링 또는 스타일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고용주는 추가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발표 당시의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개인 관리 산업체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개인 관리 사업체/서비스 운영 및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9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이발소, 미용실, 문신 또는 피어싱 상점 및 관련 개인 관리 서비스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중 상대로 폐쇄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7호를 발행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네일 기술자, 미용사 및 피부관리사, 전기 분해 요법 및 레이저 제거 서비스 항목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발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3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6월 1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을 따르는 것 외에도,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건부 발행 지침 및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개인 관리 서비스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개인 관리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개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개인 관리 산업체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개인 관리 산업체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관리 업무 소유자는 이 문서가 보다 엄격한 표준을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는 본 문서를 따름)를 제외하고 기존의 건강 및 위생 표준을 따를 것을 상기합니다. 개인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특정 표준은 주정부(Department of State, DO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표준은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예: 문신 및 바디 아트, 실내 태닝).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관리 시설의 시설 내 인력 및 고객을 점유 허가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대해 최대 점유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고객을 포함하며 서비스 제공 중은 제외됩니다. 또한 모든 경우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시설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단, 고객이 만 **2세** 이상이고 그러한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안전 또는 핵심 활동이 더 가까운 거리를 요구(예: 문신 또는 피어싱 시술, 마사지 제공,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시술, 예약 데스크 운영 또는 금전 등록기 작동)하지 않는 한 항상 직원 및 고객 사이에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 (예: 서비스 수행, 가격 입력, 건네기 위해 물건 포장) 및 직원이 다른 사람의 **6피트** 이내에 들어갈 때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피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기반 안면 가리개와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보호대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표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작업자가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사용을 수정하거나 워크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 좌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직원으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 문신 및 피어싱 워크스테이션, 마사지 테이블 또는 살롱 워크스테이션은 서로 **6피트** 떨어져 있어야 함). 워크스테이션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능한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에 따라 직원 워크스테이션(예: 문신/피어싱 워크스테이션, 마사지 테이블 또는 살롱 워크스테이션 사이)을 나누는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다른 직원 및/또는 고객 사이에 물리적 장벽(예: 플렉시 유리)이 있거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한 예약 데스크 또는 금전 등록기의 직원이 다른 직원 및 고객으로부터 **6피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리적 장벽이 있어도 직원은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예: 가격 입력)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예: 금전 등록기 뒤, 엘리베이터, 창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최대 수용량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창문 및 문 열어두기).
- 책임 당사자는 무접촉 지불 옵션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가능한 경우 미리 지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리워드 카드 및 모바일 장치의 취급을 최소화합니다(예: 고객이 현금이 아닌 전자 결제를 통해 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하루에 한 번만 취급하는 팁 봉투를 고려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테이프 또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 등으로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이 모이는 구역(예: 예약 데스크/금전 등록기 구역 앞, 건강 선별 스테이션, 휴게실)에 6피트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하여 일방통행과 6피트 간격 두기를 유도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예약제" 정책을 구현하여 예약 없이 방문하는 고객 및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대기실을 폐쇄하고 줄서기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예약하는 고객은 예약 시간까지 차량 또는 장소 밖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 당사자가 바로 예약 없이 방문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시간 예약을 잡아주어야 하며, 예약 시간까지 자동차 또는 장소 밖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문신 및 피어싱 가게는 고객이 사업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창문에 디자인을 게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네일 전문 시설은 매니큐어 병 또는 기타 공유 물품을 제거하거나 엄중히 보관하여 여러 고객이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관리 시설 내부 및 외부에 보건부 코로나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간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직원과 고객에게 다음을 알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직원 모임(예: 직원회의, 휴게실, 창고)을 제한하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동영상 또는 화상 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 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직원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애프터 케어 후속 조치, 문제 해결 또는 기타 상담과 같이 방문이 적절한 경우 대면 예약에 대한 전자적 대안을 고려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모임(예: 휴식 또는 점심 식사)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즉, 6피트 공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교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C. 직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벗도록 요구해야 할 수 있는 개인 관리 서비스(예: 얼굴 마사지, 얼굴 관리, 입술 또는 코 부위 얼굴 왁싱, 얼굴 문신, 얼굴 메이크업, 미용 입술 문신, 입술 또는 코 피어싱)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모든 개인 관리 시설은 코로나19를 위한 직장 준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문신 및 피어싱 시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고객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봉인된 포장에서 바늘을 빼도록 해야 합니다. 색소, 트레이, 핀셋/클램프, 수령 튜브(receiving tube), 바디 주얼리 또는 용기는 깨끗하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스텐실이나 면도기는 깨끗하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사용 직후에 폐기해야 합니다. 문신 기계는 각 고객 절차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덮거나 닦고/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일회용 튜브 및 그립이 권장되며, 재사용 가능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고압 살균 및 소독에 대한 제조업체 사양을 따르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구매 전 소매 상품, 특히 바디 주얼리와 고객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표준 뉴욕주 보건부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및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네일 전문 및 왁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살롱:
 - 책임 당사자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베스와 그릇을 각 사용 사이에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베스에 분출구가 있으면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배수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환경보호국 승인 용액으로 철저히 씻고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를 고려하거나 페디큐어 베스 내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너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발 건조 테이블을 각 고객 사용 후에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고객 사이에 모든 왁스 용기를 교체하거나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며, 각 고객 사용 후 폐기하는 깨끗한 일회용 용기에 왁스를 붓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다용도 용기에서 왁스를 덜어내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도포용 도구를 두 번 이상 담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회용이 아닌 "테스터" 제품 또는 컬러 샘플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품을 혼합 또는 샘플링할 때 손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취급 전에 깨끗한 장갑을 끼고 장갑을 벗은 후 버리고 손 위생을 수행하지 않는 한), 모든 고객에게 깨끗한 주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능한 한 일회용 브러쉬 사용을 권장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새로운 고객이 수건, 손가락 담그는 그릇, 주걱 등의 제품을 모두 새것이나 청소 및 소독한 것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반 기업법(General Business Law) 제27조, 19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60.19, 160.20, 160.21, 160.22 및 160.24의 위생 및 소독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헤어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살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권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발소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권고사항 및 일반 사업법 제28조의 위생 요구 사항 및 주 위생 규정(State Sanitary Code)에 의해 부과된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내에서 운영하는 이발소는 뉴욕시 보건부에서 발행한 위생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사지 테라피 및 스파 시설:
 - 책임 당사자는 엎드린 자세로 마사지 시 깨끗하고 소독된 안면 가리개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예: 얼굴 받침대에 씌운 베갯잇) 또는 이러한 자세를 모두 피해야 합니다. 직원이 안면 가리개와 안면 보호대 또는 눈 보호구를 모두 착용한 경우 직원이 엎드린 자세의 고객에게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엎드린 자세에서 반듯이 누운 또는 측면 자세로 바꿀 때 고객이 얼굴을 가리도록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리넨이 고객 사용 사이에 교체되고, 뚜껑이 달린 바구니에 보관되고, 재사용 전에 적절하게 세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본질적으로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및/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시행되는 밀폐 사우나, 스팀 룸 또는 기타 서비스를 폐쇄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사용 사이에 모든 선텐 침대와 부스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 보호 용품, 헤어 캡, 발 보호 용품 및 립밤과 같은 일회용 선텐 용품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기 순환을 늘리기 위해 모든 결방이 적절히 환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기 모범 관행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분무의 생성을 최소화하도록 시설 내 스프레이 병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회용 커버로 워크스테이션 및 의자를 덮고 새로운 고객 시술 또는 서비스 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 커버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회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만 있도록 제한합니다.
 - 직장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감소
 - 교대근무 설계(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 및/또는
 - 가능한 경우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동시에 접촉하는 손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활동을 묶습니다(예: 선반 정리).
 -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업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업무 시간을 조정하여 밀집을 줄이고 향상된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지원해야 합니다.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개인 관리 시설에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자를 금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수용량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로의 통행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명확하게 지정된 별도의 출구와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품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머물러 있는 무접촉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 절차 동안 예상 활동에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최소한 천 안면 가리개 등)를 무료로 배송 작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품의 화물을 옮기기(예: 배송 운전자로부터) 전후에 직원이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물품을 적재하기 시작 전에 손 위생을 수행하고, 모든 물품을 적재한 후 다시 한번 손 위생을 수행하여 마무리).
-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편의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 셀프서비스 바
 - 식수대
 - 잡지 구역.
- 책임 당사자는 카페 및 식당/음료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는 보건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아플 경우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II. 장소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소한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안면 가리개와 안면 보호대 또는 안전 고글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은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6피트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핵심 활동에 적합한 경우 직원에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깨끗한 작업복이나 가운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문신 및 피어싱 시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소한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수술용 마스크와 눈 보호 장비(고글 및/또는 안면 보호대) 및 일회용 장갑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개인 보호 장비를 쓰기 전과 벗은 후 적절한 손 위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만 2세 미만이거나 의학적으로 이러한 안면 가리개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동안 적절한 안면 가리개와 안면 보호대 또는 눈 보호 장비를 모두 착용하지 않는 한 모든 고객이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마스크 또는 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서는 안 되는 의료 또는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개인에게 의료용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행정명령 202.34호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하거나 필수 방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공급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소유자는 19 뉴욕법 16011(c)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추가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및 소독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청소 지침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사항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활동에 N95 마스크가 전통적으로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더 보호가 잘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품(예: 문신 기계, 오일, 윤활유, 브러쉬, 손톱 줄, 가위)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하는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공유 물체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업계에 적합한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비를 공유할 경우 장비를 청소하고 사용 사이에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벗고, 청소(해당하는 경우)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적절한 착용 및 벗기 기술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의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청소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용: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소독제의 경우: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관리 시설 전체에 손 소독제를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후에 비누와 물로 20초 동안 손을 씻거나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손 세정제 스테이션 근처에 놓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시설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 사용 전후에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관리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교대근무,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선텐 시설에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할 때 보건부 지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일회용 기구(예: 피어싱 건, 핀셋/클램프, 금속 기구)는 각 사용 후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량을 줄임으로써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작업장 장비가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도록 해야 합니다(적어도 각 고객 간 시행 포함).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청소 또는 소독 제품이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물품 또는 장비가 손상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사이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배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공급 및/또는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의 수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전체 워크스테이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예약 사이에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예: 15분).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의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출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청소 및 소독 시 최소한 모든 통행량이 많은 지역 및 고접촉 표면(예: 테이블, 난간, 화장실, 손잡이)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자 발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환자가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 청소 또는 소독하기 전에 24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 및 방문자는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직원을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환자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공유 물체(예: 지불 장치), 영역 및/또는 표면(예: 문) 취급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영역과 물체를 최소한 매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자는 고객 사이에 워크스테이션(예: 의자, 머리 받침대, 작업 표면, 마사지 테이블)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음식 및 음료(예: 뷔페 스타일 식사)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변경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시 직원 수, 시간 및 고객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가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방문객, 고객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고객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한 것을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개인 관리 시설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III. 절차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원이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진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개인 관리 시설의 지역이 주 재개 3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직원은 14일마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가능한 경우 벤더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일 건강 선별 관행을 시행해야 하지만, 고객 및 배송 직원에게 이러한 선별을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 선별 관행은 직원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직원들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 가능한 경우 벤더에 대해 선별이 필요하며, 근로자 또는 벤더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인 자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함.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및/또는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의 증상이 있었음.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건강 스크린을 작성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되고 접촉 추적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증상이 없다는 구두 또는 서면 확인을 권장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지 외에도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일일 온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체온 자료)의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또는 현장에 진입하는 방문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에 양성으로 선별된 직원은 개인 관리 시설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동반하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검사 결과가 코로나19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모든 직원의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직원 및 방문자가 후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개인 관리 시설에 대해 확인된 연락처는 양성 사례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각각의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등의 책임을 지는 현장 안전 모니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 양성 사례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확인된 연락처는 양성 사례자와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영향 받은 자의 접촉과 각 완료된 세척 및 소독 절차를 통보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업무 장소 또는 구역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지를 유지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일지에는 직원이 코로나19로 진단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하고 접촉 추적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옵션을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정보를 남길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신원을 요구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합니다.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체에서 상호작용한 직원, 방문자 또는 고객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요구되는 대로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직장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고 직원 또는 고객이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검사 결과 양성인 시점(둘 중 더 이른 시점) 전 48시간 이내에 개인 관리 시설에 입장한 모든 기록된 직원 및 고객(해당하는 경우)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법과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그들의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을 했다고 경고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 시점에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